

###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옴부즈만 이강용)

가. 제안이유

○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신철영 옴부즈만을 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 위촉하여 그 동안 축적된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며, 업무의 연속성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원활히 하고자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제2대 신철영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을 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집단민원발생 접수처리 현황은?	○ 2001년 범박동 세입자가 기양건설에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여 옴부즈만에서 중재 합의를 도출하여 전세자금 5~6백만원 지원(무이자), 임대아파트 입주시 자금 반환하고 못했을 경우 탕감 조건으로 협의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 - 없음
- 나. 반대토론
  -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요구안

의안번호	제487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신철영 옴부즈만을 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하여 그 동안 축적된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며, 업무의 연속성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원활히 하고자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제2대 신철영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을 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

# 연 임 신 청 서

“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”

자기소개서

성 명 : 신 철 영

주민번호 : 500508-1476020

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풍동 884 주공(아)10/307

현 직 :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

상기 본인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(시민옴부즈만의 조직등)의 규정에 의거 제3대 옴부즈만으로 활동코자 불임파 같이 연임신청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 합니다.

불 임 : 자기소개서 1부

2001. 5.

직 : 제2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

성명 : 신 철 영 

부천시장 귀하

## 자 기 소 개 서

- 성 명 : 신 철 영(申 澈 永)
-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(아) 10/307
- 생년월일 : 1950년 5월 8일생(51세)
- 주요경력
  - 학력 : 197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
  - 77. 12~78. 7월 (주)한양주택 근무
  - 78. 7~78. 7월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상담 교육간사
  - 88. 7~90. 11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사무국장, 공동의장
  - 91. 2~92. 4월 민중당 노동위원장
  - 92. 11~95. 11월 한우리 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0025
  - 94. 11~95. 11월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
  - 96. 5~97. 1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자문위원
  - 97. 3~99.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
  - 96. 3~99. 3월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
- 현 직
  - 제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(99. 7. 1~현재)
  -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소위원장(대통령 자문기구)
  - 부천경실련 공동대표(99. 3월~)

#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

#### 2장 시민옴부즈만실의 조직 등

- 제7조(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) ①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 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.
- ② 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.
- ③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.
- ⑤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·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 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.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 의무)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9조(해촉)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겸직 등의 금지) ① 시민옴부즈만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② 시민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